



해외시찰 보고서

-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론보도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단상¹⁾ -

상담교육팀장 양재규

I. 2007년 해외시찰 개요

올해 해외시찰의 대상지는 드넓은 태평양 너머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였다. 조준희 위원장, 양재규 팀장, 여운규 부산사무소장 3인으로 구성된 시찰팀은 11월 8일 저녁 7시 25분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811 항공편을 이용하여 8박 9일의 시찰길에 올랐다. 첫 목적지는 시드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호주언론평의회와 시드니모닝헤럴드를 9일과 12일에 각각 방문했다.

호주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 APC)는 지난 2001년 해외시찰팀이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200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Ken McKinnon 교수 그리고 사무총장

이었던 Jack R. Herman 씨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의 면담에 기꺼이 응해주었다. 이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소식지(APC news), 연구보고서²⁾ 등의 다양한 자료를 우리 숫자에 맞추어 준비해놓고 있었다. 덕분에 면담만으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큰 도움이 되었다.

12일 오전 두 번째 방문처인 시드니모닝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 SMH)가 위치하고 있는 Fairfax 사옥을 찾았다. Fairfax는 'SMH',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를 비롯한 다수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기업이다.³⁾ Fairfax 사옥은 관광명소이자 분위기 좋은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달링하버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방문한 날이 마침 새로운 사옥으로의 이전을 기념하는 개

-
- 1) '단상'이라는 보고서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심 끝에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글을 쓰다 보니 주관적인 관점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론과 관련 제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8박 9일의 일정만으로 그곳 언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보고를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글이라는 점을 표시하고자 했다.
 - 2) 자료의 표제는 'State of the News Print Media in Australia'이다. 책 내용을 살펴보니, 호주에서의 언론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로 생각된다.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신문의 미래는 있는가?"이다. 신문 산업의 위기는 우리나라나 호주에서나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듯하다.
 - 3) 거대 언론기업인 Fairfax 사에 대해 부연설명을 덧붙인다. 이 회사의 정식 명칭은 'John Fairfax Media'이다. APC 발행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이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매체는 4종의 전국지, 수십 종의 지역지, 5종의 잡지, 다수의 경제지 그리고 10여 종의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나아가 Fairfax 사는 뉴질랜드에서도 'The Dominion Post'를 비롯한 다수의 신문 및 잡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Annual Report, 2006, No.30, APC, p.83-85.)



관일이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니 아직 풀지 않은 박스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다. 면담자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이는 Sam North 편집국장이었다. 하지만 통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자들에게는 엄격하고 호랑이처럼 무섭다고 한다. 1시간 20분에 걸친 대담은 시종일관 편안하면서도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시드니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날인 13일 새벽, 우리는 수직꼬리날개에 캥거루가 그려져 있는 콰타스항공 QF47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으로 향했다. 웰링턴의 기후는 좋지 않았다. 초여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춥고, 비가 오고, 바람이 거칠었다. 비가 오는데도 바람이 강해 우산을 쓴 사람이 없었다. 우리의 세 번째 방문처인 뉴질랜드언론평의회가 숙소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서 이동했다. 뉴질랜드언론평의회(New Zealand Press Council: NZPC)는 아주 소규모였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와 대담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부의장인 Denis McLean 씨, 위원을 맡고 있는 Alan Samson 교수, 기업체에서 일하면서도 동시에 공익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인 Lynn Scott 씨 그리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Mary Major 씨까지 도합 4명이 배석하였다. 특히, Denis McLean 부의장의 프로필을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 차관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거물이었다. 프로필로 인해 갖게 된 선입견 때문이었는지 막상 대면했을 때의 느낌은 소탈하고, 수수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면담은 12시를 넘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12시가 점심시간인 점을 감안하여 4~50분 만에 면담이 끝나리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면담을 마치고 사진까지 찍고 나니 1시가 다 되었다. 면담 후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대사관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이런 일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한다.

시찰팀의 마지막 목적지는 오클랜드였다. 오클랜드는 웰링턴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웰링턴으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의 뉴질랜드 수도였다고 한다. 완만한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규모 면에 있어서 웰링턴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오클랜드에 와보니 웰링턴은 한 나라의 수도라기보다는 지방의 한 소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이곳에서는 뉴질랜드 최대의 신문⁴⁾이라 할 수 있는 뉴질랜드헤럴드(New Zealand Herald: NZH)를 방문했다. 우리 일행을 맞이한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자기 방으로 가는 도중에 편집국 내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 기자들이 취재차 현장으로 나가서인지 사무실은 한산했다. 면담은 Gardner 씨의 방에서 1시간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그는 오랜 기자생활을 통해 훈련이 된 듯 질문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논리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Gardner 씨가 정년퇴직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년을 채우기까지 기자로서의 외길을 달려온 그의 경주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마음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이로써 이번 해외시찰의 공식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4) 뉴질랜드헤럴드가 뉴질랜드 제1의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이라고 한다. 현재 뉴질랜드 내에는 전국지가 없다. John Gardner 씨는 전국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이 신문이 팔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현재 뉴질랜드헤럴드의 발행부수는 21만 4천부 정도다.

II. 방문처별 주요 면담내용에 대한 요약보고

1. 호주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 APC)

1976년 설립된 APC는 현재까지 30년 이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무처 규모만 놓고 본다면 우리 위원회 사무처와 비교도 안 되는 소규모 조직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APC와의 면담에 임함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 점에 집중하고자 했다.

가. 독자불만처리절차

APC 독자불만처리절차의 성격에 대한 정의부터 시도해보면, 결정(adjudication)⁶⁾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지향하는 다양한 ADR의 집합이라 할 만하다. APC에 접수된 사건은 가장 먼저 '알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APC 사무처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무처장⁷⁾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알선이 실패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는 정식으로 언론사 측에 송부되고 이에 대한 언론사의 답변 또한 신청인에게 송부된다. 이 단계에서 언론사가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는 경

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결국 최종절차라 할 수 있는 '결정'⁸⁾으로 넘어간다.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과 유사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중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즉, 불만처리위원회(The Complaints Committee)⁹⁾라는 APC 산하의 소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초안이 APC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승인받는 것이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통상적으로 전체회의 하루 전날 개최되며 소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전체회의에서 수정, 변경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신청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상 특이한 점들에 대해서는 항목을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위원회 심리절차상의 특징

소위원회 회의는 우리로 치면 심리기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당사자들에게 통보되고 나면 사건에 관한 더 이상의 추가 서면이나 자료제출이 양측 모두에게 금지된다. 그리고 회의에 당사자가 출석해서도 이미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할 수 없다. 이것은 상대방의 공격,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¹⁰⁾ 기일에 임박하

5) APC 사무처 직원은 총 4명이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22명을 포함한다 해도 전체 직원 수는 26명에 불과하다.
6) '평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정과 평결 사이에 내용적 차이는 없는 듯하다. 언론평의회의 결정이라는 의미에서 '평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7) 편의상 The Executive Secretary를 사무처장이라고 번역했다. 상담에서 사건 접수, 소식지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 여러 중요 업무를 맡고 있었다.
8) 물론, 결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양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각 지역에 있는 위원을 조정자로 선임해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절차도 있다.
9) 소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위원장 1명, 공익 대표 3명, 발행인 대표 1명, 언론인 1명, 편집인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7명의 위원은 매달 전체 위원 중에서 자원자 중심으로 위원장에 의해서 임명된다(Annual Report, 2006, No.30, APC, p.74.)
10) The Australian Press Council Booklet No.9, "Objects, Principles and Complaints Procedure", 2006, APC, p.13.



여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반박서면을 제출한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회의 출석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2) 소송포기각서(a legal waiver)의 제출의무

접수된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무처장은 신청인에게 소송포기각서를 제출하게끔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소송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무처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APC의 절차가 일종의 대체적분쟁해결절차(ADR)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송에서의 승패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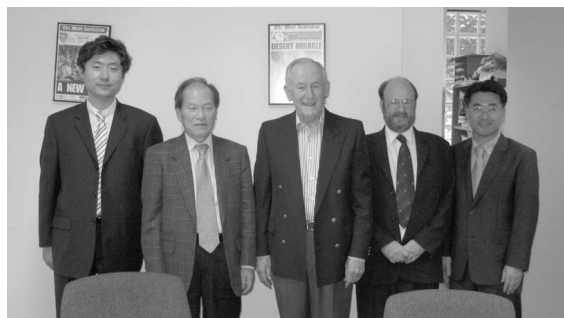
(3) 결정의 유형 및 기준

APC 결정의 유형은 크게 인용(upheld)과 기각(dismissed)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인용에는 당사자의 불만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에 이르는 1년 동안에 총 30건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서 인용된 사건은 17건으로 56.7%의 인용률을 보였다.¹²⁾ 같은 기간, APC에 접수된 전체 신청건수는 420건이

고, 그 중에서 218건은 결정에 이르기 전에 취하되거나 알선, 조정 등에 의해 해결되었다.¹³⁾

이러한 결정의 근거 내지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APC가 자율규제기구이므로 결정의 근거 또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9개 조문의 'Statement of Principles'와 8개 조문의 'Print Media Privacy Standards' 두 가지다. 이들 지침의 내용을 모두 소개하면 좋겠지만 지면 관계상 최근 개정된 바 있는 'Statement of Principles'의 다섯 번째 원칙만을 소개한다.

'언론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이를 읽는 독자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배려하기만 하면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보도할 수 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하게 전달해서는 안 되며, 기사의 표제들은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독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¹⁴⁾



<APC 방문>

11) *ibid.*, p.11.

12) Annual Report, 2006, No.30, APC, p.49.

13) *ibid.*, p.46.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Publications are free to advocate their own views and publish the views of others on controversial topics, as long as readers are readily able to recognize what is fact and what is opinion. Relevant facts should not be misrepresented or suppressed, headlines and captions should fairly reflect the tenor of an article and readers should be advised of any manipulation of images and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4) 정리

앞에서 이미 APC 절차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를 시도해보았지만 APC의 절차는 ADR로서 흔히 논의되는 협상, 조정, 중재 어느 한 가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여러 방법들이 절차 진행에 따라 시도되는 매우 특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절차 진행 초기에는 알선에 의한 당사자 간 협상(negotiation)이 시도되기도 하고,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당사자의 승낙에 의한 조정(conciliation)이 시도될 수도 있다. 그런 후에는 결국 강제력도 없는 결정(adjudication)으로서 사건을 마무리한다.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채 사건의 신속, 원만한 타결을 위해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 온라인 뉴스에 대한 불만처리

온라인 뉴스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호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4년 내지 2005년을 기준으로 호주에서의 인터넷 보급률은 56%라고 한다.¹⁵⁾ 이에 따라 APC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사들이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 회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내 5가지 주요한 경향 중 하나로 꼽혔다.¹⁶⁾ 다만, 포털사이트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와 상황이 달랐다. Herman 사무처장에게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에 대한 신청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호주 내의 대표적인 포털로는 야후, MSN, 구글 등을 들 수 있

는데 야후나 MSN에 게재되는 뉴스들은 모두 케이블채널로 방송되고 있고, 구글의 경우에는 뉴스 검색이 가능하지만 자료실 내지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한국 내 포털의 뉴스서비스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온라인 뉴스의 유통을 포털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고, 나아가 그날그날의 주요 뉴스를 선택하여 초기 화면에 올리는 방식의 서비스는 우리의 독특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⁷⁾

2. 시드니모닝헤럴드
(Sydney Morning Herald: SMH)

Sam North 편집국장과의 면담에 있어서 주된 초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독자들이 제기한 불만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현황이었고, 둘째는 호주언론평의회에 대한 평가였으며, 셋째는 온라인 뉴스 관련 문제였다.

가. 독자불만처리시스템

SMH는 제법 체계적인 독자불만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우선 사내에 독자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ReaderLink' 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팀 내에는 2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독자와 기자 사이의 가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독자가 제기한 불만은 이 부서에 접수되고, 담당 직원은 불

15) State of the News Print Media in Australia, APC, sydney, 2006, p.5.

16) ibid, p.5-6.

17) 송경재, 포털 뉴스서비스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자료집, 2007, 서울, 43-48쪽.: 이 글에서는 뉴스의 유통과 확산을 포털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뉴스서비스 편집을 통한 제2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포털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한국형 포털서비스' 라고 명명하였다.



만이 제기된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게 e-mail로 불만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한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기자는 2일 내에 불만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만일, 이들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명이나 응답이 없으면 이 사건은 편집국장에게 보고되며, 편집국장이 직접 해당 기자와의 접촉에 나선다.

Sam North 편집국장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1,166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건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에 대한 문의(Inquiry)가 5,7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Complaint)이 2,337건, 반론(Comment)이 1,468건, 오류(Error)¹⁸⁾가 1,21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섹션은 사회란(National)과 오피니언란 등이다.

'ReaderLink' 팀의 인적 구성에 관련된 보충 질문을 시도했다. 사내 직원들이 불만처리를 담당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부 인사로 불만처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Sam North 편집국장은 20여 년 전에 외부 옴부즈맨 제도를 시도한 바 있었는데 실패로 끝났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주 정부의 언론에 대한 대응태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부도 독자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담담하게 답변했다. 동시에 정부는 늘 좋은 소리(good news)만 듣기를 원한다고 했고, 좀 시끄러운 독자라고 했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한다.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정정 등을 요구해오면 기꺼

이 들어줄 용의가 있으나 정부의 시책 등에 대한 비판적 기사의 논조나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했다.

나. APC에 대한 평가

Sam North 편집국장은 현직 언론인이면서 동시에 APC의 위원이기도 하다. APC가 언론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보니 이러한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Sam North 편집국장에게 APC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난처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APC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다고 Sam North 편집국장은 말했다. 또한 APC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렇지만 APC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총평을 내렸다. 특히 언론계 외부의 인사와 언론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APC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 온라인 뉴스 관련 문제

SMH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당일 아침, 호텔 식당 입구에 비치된 SMH 신문을 훑어보다가 사무실 이전과 더불어 온라인 뉴스부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에 온라인 뉴스 관련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18) 통계표상으로는, 'error'와 'downgraded error'가 구분되어 있으나 양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합쳐서 'error'로 표시한다.

우선 온라인 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 방식과 관련해서 Sam North 편집국장은 잘못된 기사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원 기사를 수정하여 올린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에 더해 기사 하단부에 “초판은 잘못되어 수정했다”는 알림글을 같이 띄우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온라인 뉴스와 관련된 흥미 있는 소송 한 건을 소개했다. 2003년, 멜버른에 사는 조셉 굿닉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발행한 온라인 뉴스에 대해 호주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미국의 언론사이고 기사의 발행지도 호주가 아니었으므로 관할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호주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호주에서의 소송제기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조셉은 승소했다고 한다.



〈SMH 편집국장과 면담〉

3. 뉴질랜드언론평의회

(New Zealand Press Council: NZPC)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꼴이다. 호주의 콰타스 항공사가 뉴질랜드 국내노

선에 취향하고 있을 정도였다. 두 나라가 서로 닮은 것처럼 NZPC 역시 APC와 비슷했다. 설립연도에 있어서는 NZPC가 1972년으로 APC보다 4년이 빠르다. NZPC 방문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가. 위원구성의 절차, 방법

NZPC는 위원장 1인과 공익 대표 5인, 신문발행인들의 연합체 대표 2인, 잡지 발행인 대표 1인, 출판 산업 대표 2인 도합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주로 은퇴한 법관들이 맡는다고 한다. 현재의 위원장인 Barry Paterson 역시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공익 대표를 맡고 있는 위원들의 직업은 아주 다양하다. 변호사가 두 명, 교사가 한 명, 은퇴한 외교관이 한 명 그리고 회사원이 한 명이다. 특이한 것은 공익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었는데 전국에 위원 모집 광고를 내서 이 광고를 본 사람들 중에 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고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터뷰를 해서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한다. 심사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NZPC 위원 구성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미국의 배심제와 우리의 재판부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이질적이라고 생각된다. 위원들의 전문성, 객관성이나 공정성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위원 구성 방식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 민주성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자발적인 소원을 가진 국민 중에서 신청에 의해 위원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NZPC 방문〉

나. APC 절차와의 차이점

NZPC 절차는 APC 절차와 유사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APC 절차는 결정에 이르기 전에 알선을 통한 당사자 간 협상이라든가, 위원을 통한 조정 등 다양한 분쟁해결의 방법을 시도한다. 그러나 NZPC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공방을 거친 후에 곧바로 결정에 회부된다. 협상,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해결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의 절차는 위원회에 대한 당사자나 언론사 측의 깊은 신뢰 없이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를 30년 이상 운영해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나 언론사들로부터 NZPC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심리절차의 차이점이다. 심리에 당사자들 및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참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심리에 참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2006년의 경우, 전체 55건의 사건 중에 심리에 참석한 사람 한 두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결국 당사자들 간에 오고 간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다. 정리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으나, 최근 들어 NZPC에 접수 처리되는 사건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2003년에는 79건, 2004년에는 75건, 2005년 80건, 2006년 55건이다. 그 이유를 묻자, NZPC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언론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NZPC에서 절차나 제도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위원회 제도나 절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다. NZPC와 우리 위원회 간에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이루는 방안 대해서도 강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다.

4. 뉴질랜드헤럴드(New Zealand Herald: NZH)

John Gardner 편집부국장과의 면담에서도 SMH 방문 때와 비슷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한 가지, 뉴질랜드 내 한국이민자들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보도태도와 관련해서 시사적인 질문을 추가했다.

가. 오보방지 및 오보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SMH와는 달리 NZH에는 독자불만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신문 내에 'correction & clarification'이라는 섹션이 있고, 이 섹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자 한 사람이 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독자불만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부서가 없다고 해서 자신들이 독자의 불만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말했다. 독자들이 기사에 대한 불만이
나 이의를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이에 반응하고, 일단
들어주고 불만을 수용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
울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독자들의 불만제
기건수가 많지 않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6년도에
NZPC는 NZH에 대한 총 3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¹⁹⁾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한 건도
없었으며 13건의 불만신청 문건이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되었으나 원만히 타결되었다고 한다.

불만처리를 위한 시스템 측면에서는 다소 체계적
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오보방지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면에서는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 우선 한국의 몇몇 신문사들이 채택하고 있
는 '변호사 사전기사 열람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하고 있었다. NZH를 발행하는 회사인 APN 내에
그들 전체를 총괄하는 변호사가 한 명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를 통해 범죄보도라든가 명예훼손의 가능
성이 큰 기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전에 열람
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오보에 대해서는 엄격하리만큼 매
우 철저하게 다루고 있음을 한 예를 통해 설명했다.
한 기자가 실제로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
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작
성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담당
기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회사 차원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낸 것은 물론이고, 이전
에 그 기자가 쓴 다른 기사에는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체크했다는 것이다. 오보가 발생했을 때 어물
쩍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제2,
제3의 오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나. NZPC에 대한 평가

John Gardner 편집부국장 역시 SMH의 Sam
North 편집부장과 같이 현직 언론평의회 위원이다.
이런 그에게 NZPC에 대한 평을 부탁했다.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자로
서의 평가임을 전제로 하고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현직 언론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평의회로서의 독립성,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평의회가 안고 있는 한계점
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평의회 운영재
원 문제다. 언론사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평의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시각
에서는 충분히 그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갖
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무엇인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NZPC의 경우처럼 언론사들이 출연한 돈으로
운영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예산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상당히 좋은 시
스템이라며 부러움을 나타냈다.



〈NZH 편집부국장과 함께〉

19) The 34th report of the NZPC, 2006, NZPC, p.92.



다. 언론보도 관련 각종 인권문제들

그 외에 언론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인권문제들에 대해 질문과 대답이 오고갔다. 개인의 초상보호와 관련해서 물었는데, 아직 뉴질랜드에서는 초상권이나 사생활이 문제되어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서서히 느끼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당노 관련 기사에 뉴질랜드 사람의 사진을 내보내지 않는다. 또 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라도 뚱뚱한 사람의 사진과 같이 당사자로서 불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원이거나 거리 등에서의 사진촬영은 공공장소(public place)에서의 문제이므로 큰 걸림이 없다. 그러나 만일 이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다민족 국가인 뉴질랜드는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마오리 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대부분의 공공표지판에 영어와 더불어 마오리족 언어를 기재하는 등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과연 뉴질랜드의 언론 역시 소수 이민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듯 난색을 표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극히 사적인 감상이었지만, 문득 현지 언론의 편파적이거나 왜곡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을 교민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외국민 보호 및 법률지원 차원에서 그곳 언론평의회를 통한 불만 신청절차라든가, 각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제도 등을 연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장기적

으로 세계적인 언론피해구제기구를 지향하는 우리 위원회의 비전에 비추어 진지하게 고려해봄직하다.

Ⅲ. 보고를 마치며

비록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를 돌아본 것에 불과했지만 우리 위원회의 제도와 절차가 언론보도를 위한 피해구제에 얼마나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절차인지 이번 시찰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제도 운영의 근거도 확실하고, 조정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운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서구 언론들로부터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언론보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그저 말로만 외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혹은 자정노력이 아니라 오보에 대처하는 냉정한 태도 등 우리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국민은 언론을, 언론은 정부를, 정부는 또한 언론을 경원시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자율적인 규제 장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사회 분위기가 그곳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만큼이나 부럽다. 혼탁한 서울의 공기도 하루 속히 정화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언론환경 또한 맑고 깨끗해져서 의심 없이 신문 읽고, 방송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